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, 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3. 1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



1. 결정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

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33, -36번지

3. 면적 또는 규모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①	-	소공원	가좌동 556-33번지	-	856	856	-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결정내용	결 정 사 유
①	소공원	• 소공원 신설 A = 856㎡	•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신설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②	주차장	가좌동 556-36번지	-	696.8	696.8	-	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결정내용	결 정 사 유
②	주차장	주차장 신설 A = 696.8m²	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

4. 지형도면 : 게재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 <http://luris.mltm.go.kr/> 열람 가능)

